

# 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】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307 |
|----------|-----|

2023. 11. 30.  
자치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11. 10. / 김지훈(민) 의원 등 10명
- 나. 회부일자 : 2023. 11. 13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3. 11. 30.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남양주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 향상과 인권 증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사회·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, 시장의 책무 등(안 제1조~제4조)
-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규정(안 제5조)
-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규정(안 제6조)
- 공공기관의 차별금지 및 부당한 계약해지 금지에 관한 규정(안 제7조~제8조)
- 공공기관의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규정(안 제9조)
- 공공기관의 노동관계 법령 준수에 관한 규정(안 제10조)
- 노동조건 향상사업에 관한 규정(안 제11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서진원)

- 본 조례안은 조직화가 어려워 스스로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,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.

또한 남양주시 소속 공공기관 뿐 아니라 시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민간기업 등에 권고토록 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권익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# 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### 5. 토론요지

- 없 음

### 6. 심사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### 7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붙임 : 남양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